

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부 제출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 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함(안 제12조제1호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최 기 도)